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26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이해식・박정현・정을호

채현일 • 조정식 • 이상식

복기왕 · 김문수 · 위성락

황명선 · 문진석 · 서영교

차지호 · 이재관 의원

(14인)

제안이유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59개 기관이 1,537건의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고, 전체 여론조사의 6.8%인 127건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등 기준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고발,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음.

특히 명태균이라는 자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대통령선거, 재보궐선거, 전국지방선거, 22대 국회의원 선 거까지 여론조사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비공표조사를 통해 사전에 표 본을 추출하고, 조사결과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여론을 왜곡시켜 선거 관리를 혼탁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특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오염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한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정치적 소모전과 정치혐오를 부추켜 민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게 됨.

SNS와 뉴미디어의 발달로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과 수요가 커지면서 '떴다방'식 조사업체가 난립하고 여론조작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유혹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법적 규제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된 조사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함.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선관위가 조사대상 표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비공표용 조사에도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또한 여론조사기준을 어기고 불공정, 여론조작형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법 소지를 줄이고자함.

주요내용

-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 장함(안 제8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나.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선고받은 벌금형의 벌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넘거나 2회 이상 부과받은 과태료의 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1회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를 포함)에는 6개월에서 1

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 실시 서면신고 제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 라. 오전, 오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조사하여 특정 계층의 피조 사자가 많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5항제5호 신설).
- 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는 시기를 '공표·보도전'에서 '공표·보도 12시간 전'으로 변경함(안 제108조제7항).
- 바.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번호로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108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 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비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한다.
-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선고받은 벌금형의 벌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
-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부과받은 과태료의 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1회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를 "누구든지"로, "조사지역·일시·방법"을 "조사지역·일시(실시일의 오전 및 오후 시간대를 포함한다)·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공표·보도 전에"를 "공표·보도 12시간 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오전, 오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조사하여 특정 계층의 피조 사자가 많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④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번호 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08조의2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14항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선정된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휴대전화 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전환하여 제공할 수 있다.
- (b) 휴대전화 번호에 제공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제108조의2제1항 중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전화"로 한다.

제256조제1항제2호 중 "제108조의2제5항"을 각각 "제108조제16항 및 제108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여론조사기관의 영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반하여 선고받은 벌금액 또는 부과받은 과태료의 합계가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
	승)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	⑤
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	
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	<u>2</u>
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u>년</u>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
	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영업
	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

⑥ (생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② (생 략)

-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u>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u>조사지역 · 일</u>시 ·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 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

런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선고받은 벌금형의 벌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
련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부과받은 과태료의 합계가 1
천만원을 넘는 경우(1회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를 포함한다)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누구든지</u>
<u>조사지역・</u> 일
시(실시일의 오전 및 오후 시
<u>간대를 포함한다) · 방법</u>

<삭 제>

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	<u><</u> 삭 제>
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	
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	<u><</u> 삭 제>
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	<u><</u> 삭 제>
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	<u><</u> 삭 제>
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	
<u>스통신사업자</u>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u><삭 제></u>
자가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u><삭 제></u>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	
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	5
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	

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 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 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調 査對象의 전계층을 代表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신 설>

⑥ (생략)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u>공표·보도 전에</u>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 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1. ~ 4. (현행과 같음)
5. 오전, 오후, 야간 등 특정 시
간대에만 조사하여 특정 계층
의 피조사자가 많이 포함되거
나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u>행위</u>
⑥ (현행과 같음)
⑦
<u>공표·보도 12시간 전</u>
<u>에</u>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⑧ ~ ⑴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 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대상자 의 휴대전화 번호의 제공을 요 청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공받 은 휴대전화 번호 또는 휴대전 화 가상번호로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0 8조의2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b) 제14항에 따라 휴대전화 번 호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선 <신 설>

④ (생략)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 대	<u> 상자</u>
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선	정된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
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휴
대전화 번호를 휴대전화	<u>가상</u>
번호로 전환하여 제공할 수	- 있
<u>다.</u>	
(B) 휴대정화 번호에 제공에	과

- 하여는 제57조의8제4항 및 제9 항을 준용한다.
- ① (현행 제14항과 같음)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u>전화</u>----

② ~ ⑥ (현행과 같음)

처한다.

- 1. (생략)
- 2. 제57조의8제9항제1호(제108 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 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2제1 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57조 의8제9항제2호(제108조의2제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 게 제공한 자
- 3. ~ 5. (생 략)
- ② ~ ⑤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利108</u>
조제16항 및 제108조의2제5항
제108조제16항
및 제108조의2제5항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